

추천서

아래 사람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소 속 :

성 명 :

분 야(세부분야) 명 :

2024년 월 일

소속기관(단체)명 ○ ○ ○

표준제정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약력

※ '추천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분야	분야	산업안전일반		기계전기안전		건설 안전	화학 안전	보건위생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 4cm)
	세부 분야 (해당란 v표기)	<input type="checkbox"/> 산업 안전	<input type="checkbox"/> 리스크	<input type="checkbox"/> 기계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건축 <input type="checkbox"/> 토목	<input type="checkbox"/> 화학	<input type="checkbox"/> 산업 보건	<input type="checkbox"/> 산업 의학	<input type="checkbox"/> 산업 위생	<input type="checkbox"/> 산업 독성	
2. 인적 사항	성 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자택 주소	(우편번호 :)										
3. 직장 현황	전화						휴대전화					
	FAX											
	e-mail											
	직업군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단체(),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기타()										
	주 소	(우편번호 :)										
	직장명						부 서 명					
4. 자격요건 (해당란v표기)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①. 표준제정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②.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적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③. 표준제정위원회와 관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표준제정위원회와 관련된 단체의 해당 기술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표준제정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div>											
5. 자격증 보유현황 (해당 시)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 가 · 관 리 기 관					

6.학력사항	학위 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7.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주요업무경력
	~				
	~				
	~				
	~				
	~				
8.수상경력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수상종류	수상내용	
9.주요 저서 및 논문	제출년월일	출판사·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10.(외부) 전문위원 활동경력	등록년도	외부위원등록기관	전문분야	세부 전공분야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당사자 :

(인, 또는 서명)

추천서 작성방법

1. 추천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위촉 분야별(산업안전일반, 기계전기안전, 건설안전, 화학안전, 보건위생)** 해당되는 세부분야에 체크(✓)합니다.

2. 인적사항 ~ 3.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직급 : 공기업·준정부기관·협회 등은 임원(본부장), 1급, 2급
 학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연구기관은 책임자급, 선임급(연구관), 연구원
 투자기관, 출연기관, 업계 등은 임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 직업군은 해당군에 체크합니다.

4. 자격요건은 [① ~ ⑤]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자격증은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예: 지도사, 기술사) 보유 시에만 기재합니다.

6. 학력사항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고,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며,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단, 고졸 이하일 경우에는 고교 출신학교를 기재합니다.

7.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전문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 업무 경력을 기재합니다.

8. 수상경력은 추천 관련 분야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9. 주요저서 및 논문 현황은 최근 5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및 신기술의 제목,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추천받은 분야의 (외부)전문위원 활동경력은 공공기관의 (외부)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등재된 등록기관, 등재된 전문분야 및 세부 전공분야를 기재합니다.

11. 5~10항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표준제정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추천 관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된 개인정보는 증거서류 보관 등을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자료를 삭제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추천 지원자 등록에 필요한 정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수집 동의 거부 시 표준제정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수집 동의 거부 시 표준제정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추천당사자 :

(인 또는 서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